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8호 2023. 4. 14(금)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727호 남원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전부개정규칙----- 1
- 남원시 규칙 제728호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6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46호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를 위한 남원시 규정 일괄개정규정-----16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814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 열람공고 -----20
- 남원시 공고 제2023-842호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4월 14일

남원시 규칙 제 727 호

남원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전부개정규칙

남원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 공무원중 그 공적이 탁월하여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2.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행정실적을 현저하게 거양(擧揚)한 사람

4. 창의,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남원시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각 실·과장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창은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매년 12월 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 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배수 내에서 우선 승진
3. 정책연수대상자 등으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10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 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급여 지급일로 한다.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

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경우
4. 그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부서에 알리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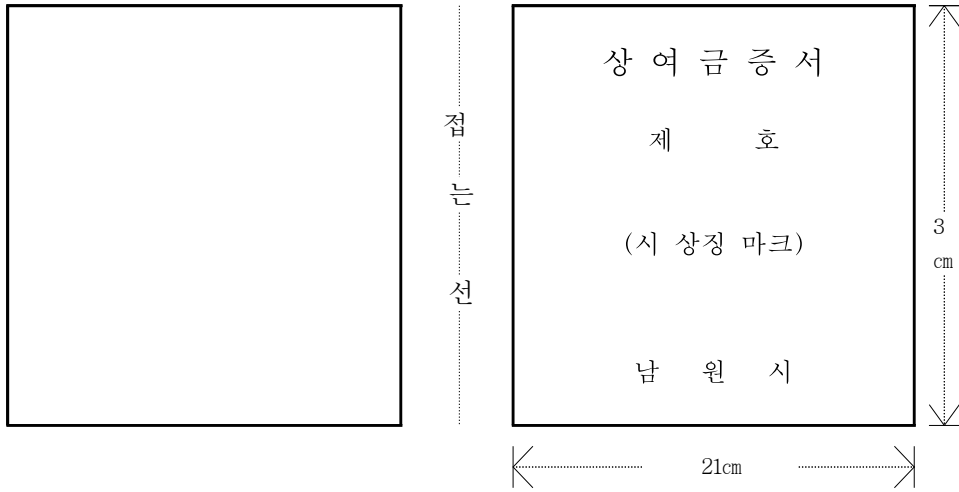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상여금 증서(제8조 관련)

(바깥면)



(안 면)

상여금 수급권자

소 속 :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지 급 액 :
 지급기간 :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4월 14일

남원시 규칙 제 728 호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남원시청 소속 근로자가”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6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통합운영 공용차량”이란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승인 후 차량 제어·운행·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남원시”를 “시”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

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매·임차하고자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차형은 유사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형에 준하며,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6개월 이상 5년”을 “1개월 이상 3년”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차량 총괄부서는 단위기관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유지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승합차량의 운행관리) ① 단위기관의 장은 다인 승합차량(중·대형버스)의 지원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인승 승합차량의 배차 승인 시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시 및 상위기관 주최의 공공성 행사에 따른 인원 및 물자 수송지원
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행사지원
3. 긴급을 필요로 하는 재해복구 지원·구호·자선적 행사 등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행사
4.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해당부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시·도 및 시·군에서 주최하는 대회, 도 단위 행사 이상) 등에 참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1항 중 “남원시장은”을 “차량 총괄부서에서는”으로 한다.

제6장(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통합운영 공용차량

제37조(운전가능범위 등) ① 통합운영 공용차량 앱(이하 “앱”이라 한다)이용자는 소속 공무원(공무직 포함)으로 한정하며,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 및 계약직 직원 등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의 승인 후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운전할 수 있다.

③ 앱을 설치한 직원 등이 퇴사 시에, 단위부서의 장은 앱을 삭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기록관리) ①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운행일지는 스마트링크시스템(공공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 다만,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유류수불대장과 정비대장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운행 중 주유 시 스마트폰 앱에 반드시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9조(통합운영 공용차량 관리) 차량 총괄부서와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관리 및 운행하여야 한다.

1. 차량 총괄부서 및 운전자는 차량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차량이 상시 운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다.
- 3.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 11. (생략)</p> <p>12. “차량 직접 운행”이란 공용 차량을 배차 신청하여 사용하는 <u>남원시청 소속 근로자가</u>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p> <p>13.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 2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u>6개월 이상</u>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 각 호와</u>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 -----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한다)</u>이 ----- -----.</p> <p>13. ----- ----- ----- ----- ----- <u>1개</u> <u>월</u> ----- ----- --.</p> <p>14. “<u>통합운영 공용차량</u>”이란 <u>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u> <u>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앱을</u> <u>통해 실시간 배차신청·승인</u> <u>후 차량 제어·운행·반납을</u> <u>비대면으로 하는 것을</u>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u>남원시</u>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p>	<p>제3조(적용 범위) ----- <u>신</u> ----- ----- ----- ----- ----- ----- -----</p>
<p>제5조(정수배정) ①·② (생략)</p> <p>③ <u>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할 경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정수배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8조(정수배정 협의) (생략)</p> <p><신 설></p>	<p>제8조(정수배정 협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매·임차하고자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차형은 유사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형에 준하며,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차량 직접 운행 등) ① <u>날</u> 원시장은 직원의 업무 능률향상 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근로자가 차량을 직접 운 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u>여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 및 상위기관 주최의 공공 성 행사에 따른 인원 및 물자 수송지원</u> 2. <u>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행사지원</u> 3. <u>긴급을 필요로 하는 재해복 구 지원·구호·자선적 행사 등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공 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행사</u> 4. <u>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해당부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시·도 및 시· 군에서 주최하는 대회, 도 단 위 행사 이상) 등에 참석하는 경우</u> 5.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p>제35조(차량 직접 운행 등) ① <u>차</u> 량 총괄부서에서는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② <u>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운행 중 주유시 휴대전화 앱에 반드시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즉시 입력한다.</u></p> <p>③ <u>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6조를 준용한다.</u></p> <p><u>제39조(통합운영 공용차량 관리)</u> <u>통합운영 공용차량의 관리부서와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관리 및 운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차량 총괄부서 및 운전자는 차량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차량이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u> <u>2.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u> <u>3.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u>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를 위한 남원시 규정 일괄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4월 14일

남원시 훈령 제 446 호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를 위한 남원시 규정 일괄개정규정

제1조(「남원시 자체감사결과 심의회의 규정」의 개정) 남원시 자체감사결과 심의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2조(「남원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의 개정) 남원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3조(「남원시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규정」의 개정) 남원시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전자문서수발”을 “전자문서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4조(「남원시 관광협의회 운영 규정」의 개정) 남원시 관광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자체감사결과 심의회의 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의를 대표한다. ②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사무----- -----. ② (현행과 같음)

제2조(「남원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사무-----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남원시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u>전자문서수발</u>”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생산된 각종 공문서에 대한 등록·발송·접수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능을 말한다.</p> <p>11. ~ 12. (생략)</p>	<p>제3조(정의)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10. “<u>전자문서 접수·발송</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제4조(「남원시 관광협의회 운영 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준용) 협의회는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p>	<p>제6조(준용) ----- -----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남원시 공고 제2023-814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33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 열람 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3-33호선)사업인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열람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4월 1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가. 명 칭 :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변경)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신정동 935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구 분	결 정 조 서		개 설(조성) 계 획				시 행 구 간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당초	변경		
중로3-33	13~18	363	13~18	363	5,415.3	5,530.1	신정동 95번지 ~ 신정동 155-9번지	폭원 확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에버종합건설 대표자 최 산 성

나.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양동2가)

-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3. 10. 05.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번호	위 치 (신청동)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5,530.1	5,530.1					
1	934	도	842.2	842.2	주식회사 에버종합건설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2	935	도	3,893.1	3,893.1	주식회사 에버종합건설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3	936	도	55	55	주식회사 에버종합건설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4	937	도	32.9	32.9	주식회사 에버종합건설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5	938	도	64	64	주식회사 에버종합건설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6	939	도	541.9	541.9	주식회사 에버종합건설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7	940	도	10	10	주식회사 에버종합건설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8	941	도	91	91	주식회사 에버종합건설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 6.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 7.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4)
- 8.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축 산 과 장

1. 개정이유

곤충산업 흐름 변화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곤충 농·생명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규정 (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14. ~ 2023. 5. 4.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곤충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u>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u>시장은 곤충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